

재입학에 관한 규정

제정 1996.09.04.

개정 2004.11.01.

개정 2009.02.06.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17조에 의한 재입학자의 자격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재입학자의 정원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 여석 산정
2. 학생활동 관련 제적자의 경우는 별도 정원에 의함
3. 재입학 여석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3학년 학생 중 대학을 중퇴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함

제3조(시기) 재입학은 학기초에 한하며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지 않은 때라야 한다.

제4조(자격) 재입학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본 대학 자퇴자 및 제적자
2. 재입학 학과는 자퇴 및 제적 당시의 학과에 한함
3. 본 대학 재입학 신청이 1회 미만인 자

제5조(절차) 재입학의 절차는 학사지원팀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 재입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재입학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재입학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학사운영처장, 해당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재입학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심의하며, 재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도 위원회의 심의에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 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